

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9. 2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솔	96. 11. 26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(중단)	정당한 사유 없이 유선 연락 및 출석통지 4회 발송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 22. 8. 16. 2차 출석통지: 22. 8. 24. 3차 출석통지: 22. 8. 31. 4차 출석통지: 22. 9. 7.	○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(이하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2. 9. 28. ~ 2022. 10. 1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정아(Tel. 031-686-17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